



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문화 조성

**경상북도교육청-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2026년 1차 노사협의회 결과**



**경상북도교육청
(학교지원과)**

2026년 1차 노사협의회 결과

<학교지원과 공무원단체담당>

1

총괄

□ 협의회 개요

- (일시) 2026. 1. 28.(수) 17:00~
- (장소) 경상북도교육청 행복지원동 3층 301호 대회의실
- 참석자(12명)
 - 교육청(6명): 행정국장, 학교지원과장, 급식담당·인사담당·조직담당·공무원단체담당 사무관
 - ※ 각 안건별 업무 담당자는 별도 배석
 - 노동조합(6명): 노조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총장, 김중형(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), 김두리(의성초등학교), 최성열(꿈빛유치원)

□ 협의 안건(총 12건)

연번	안 건 명	주관 부서
1	[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및 독서지원비 추가 신설]	총무과
2	[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조합 계시판 신설]	미래교육정보과, 총무과
3	[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 수당 지급]	기획예산관, 행정과
4	[조리직렬 공무원의 교육(지원)청 급식담당 부서 배치]	체육건강과
5	[방학 중 행정실 재택 근무 실시]	총무과
6	[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수정 배포]	행정과
7	[단체협약 이행 요구]	학교지원과, 행정과
8	[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]	총무과
9	[운전직렬 상위직급(6급) 정원 증원]	행정과
10	[급식차량관리 규정 제정 및 급식차량 운용 수당 지급]	체육건강과
11	[퇴직(예정)자 정밀 건강검진비 신설]	학교지원과
12	제안[급여 우수리 기부]	학교지원과

2

협의 안건 및 협의 결과(상세)

안건 번호	안 건(요구 사항)	협의 내용
1	<p>[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및 독서지원비 추가 신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(다양한 도서 구입 및 체험학습, 직무 능력 향상 및 교육활동 지원 경비, 자기 계발 목적의 학원 교육비·교재비 등) ○ 자율연수비 내 ‘독서지원비(10만원)’ 세부항목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. ▣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시, 무분별한 자율연수비 신청 가능성 있음. ▣ (독서지원비)기존 자율연수비 지원항목 및 내용과 중복됨.
2	<p>[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조합 게시판 신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용 메신저 사용 ○ K-에듀파인 내 노동조합 게시판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특정 단체나 목적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. ▣ 업무용 메신저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인내받는 것에 사용자 불만 사례가 다수 있음. ▣ 대규모 쪽지 발송 시 시스템 성능 저하와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. ▣ 경상북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(내부메일)은 특정 단체·동호회 운영 홍보를 위한 내부메일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업무관리를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 ▣ 특정 단체나 목적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.
3	<p>[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 수당 지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, 구성, 회의록 등 실질적 업무를 간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마련토록 함 ○ 『교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』에 간사업무활동 경비 지급근거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현행 법령에는 해당 수당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, 상위 법령·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업무 활동 경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업무 활동 경비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.
4	<p>[조리직렬 공무원의 교육(지원)청 급식담당 부서 배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 조리원을 본청 체육건강과에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,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,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·안전 실무에 전문성을 가진 직렬로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데는 그 직무의 적합성이 낮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.

안건 번호	안 건(요구 사항)	협의 내용
5	<p>[방학 중 행정실 재택 근무 실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방학 중 행정실의 재택 근무 실시로 일·가정 양립 지원 ○ 학교 업무공백 방지 범위 내 희망자 중심·자율 시행 (사례: 경기도·인천) 	<p>☞ 대면·현장 필수업무의 공백 방지, 민원 발생 사전 차단 및 학교 근무자의 직종별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현행 오프라인 근무 유지가 필요.</p>
6	<p>[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수정 배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급 이하 및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안 개정 추진 ○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간 업무량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조정 ○ 시설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관리 행정사무업무가 가능한 시설 관리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표준안 제시 	<p>☞ 전담반(TF) 운영,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내 업무분장 표준안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.</p>
7	<p>[단체협약 이행 요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기별 이행 결과 통보 (협약 제29조) ○ 근로조건 등 관련 규정 제·개정 시 사전 협의 이행(협약 제3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리직 공무원 일몰제 - 직영 통학차량 임차 전환 ○ 노사교육 현행 지속 시행 (협약 제5조 제4항) 	<p>☞ 전임 위원장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연 1회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함.</p> <p>☞ 반기별 이행 결과 요구 시 반기별로 노동조합에 통보.</p> <p>☞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등은 정책 결정 및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감의 입법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것임.</p> <p>☞ 다만, 조합원의 “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”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협의 추진.</p> <p>☞ 조합원 연수를 사용자인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, 부당노동행위와 지배·개입의 소지가 있음.</p> <p>☞ 그동안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노사관계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으나 노사관계 교육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,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.</p>

안건 번호	안 건(요구 사항)	협의 내용
8	[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]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12조) 필수보직기간: (기준) 1년 6개월 → (변경)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1년 ○ (제13조의3)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: ①항2호마목 : “교育행정 이외의 직렬에 해당하는 자” 삭제, ② · ④항: 포항 · 구미교육지원청에 한하여 본청과 동일한 전보 기준 적용 ○ 일몰제 적용 “조리직렬” 전보 기준 별도 마련(연고지 배치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자녀 출산 ·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근거지 배치를 희망하나, 생활근거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필수 보직기간 단축은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☞ 지원청 근속제한을 없앨 경우 특정인 장기 근무에 따른 학교 근무자의 지원청 근무 기회 차단, 승진 · 보직 기회 제한 등 인사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음. ☞ 휴직자 복직 시 전보서열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휴직 당시 학교 ·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음. 그러나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의거 휴직(6개월 이상) 시 결원을 둘 수 없으므로 즉시 보충함에 따라 휴직 당시 학교 · 지역에 복귀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.
9	[운전직렬 상위직급(6급) 정원 증원]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전직렬 6급 및 7급 정원 확대 ○ 임차 비율 축소 및 운전직렬 신규 채용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2026. 7. 1.자 정원 조정 시 증원 예정. ☞ 학생 수 변동 · 결원 대응을 위해 임차 기조 유지가 타당하며, 운전직 신규채용은 임차전환 계획과 정 · 현원 및 퇴직(예정)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.
10	[급식차량관리 규정 제정 및 급식차량 운용 수당 지급]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급식차량 운영 운전직 공무원 수당 지급 ○ 급식차량 운영 규정 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「공무원 보수 규정」, 「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보수업무 처리 지침」 등 상위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 사업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신설 ·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. ☞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급식 운반 업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, 공동조리교 · 비조리교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은 학교별 업무분장 및 운영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.
11	[퇴직(예정)자 정밀 건강검진비 신설]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퇴직(예정)자 정밀 건강검진비 100만원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교육공무직원,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. ☞ 과도한 교육재정 소요로 현실적으로 어려움.
12	제안[급여 우수리 기부]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 월 개인 월급여액의 1,000원 미만 우수리 금액을 기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주관 부서 선정 및 타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등 추가 검토 후 사업 추진.